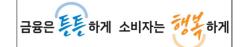


보도자료



보도	2024.9.4.(수) 조간	배포		2024.9.3	3.(화)
담당부서	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감독총괄팀 가상자산검사팀	책임자	국 장	이현덕	(02-3145-8160)
		담당자	팀 장 팀 장	안병남 조강훈	(02-3145-8162) (02-3145-8323)

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영계획

1. 개요

- □ 금융감독원은 「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」('가상자산법') 시행(7.19.)에 따라 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
 - 감독당국은 법 시행 전부터 **로드맵 제공**(2월), 현장컨설팅 및 규제 시범적용 등을 통해 사업자의 법규 이행 준비를 지원해왔으며,
 - 법 시행 이후 본격적인 검사를 통해 새로운 규율체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
- □ 한편, 가상자산법은 **이용자보호의 중요성・시급성**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**기본적인 규제**만을 담고 있으므로
 - 업계 자체적인 **내부통제 강화**와 함께 **자율규제 환경**을 구축・ 준수하여 **가상자산시장**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
- □ 이에 금감원은 사업자의 영업행위가 **시장에 미치는 영향**, 사업자의 **이용자 보호 수준** 등을 감안하여 **검사대상을 선정할 예정**이며,
 -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,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등 사업자의 **법상 의무 이행 여부**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
 - **자율규제 적용 실태, 불건전 영업행위** 등의 점검을 병행하고, 검사 과정에서 **보완 필요사항** 등을 발굴하여 **제도 개선**도 추진할 예정

II. 2024년도 검사업무 실시계획

◆ 가상자산법 조기 안착,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주요 사업자 중심의 엄정한 검사를 실시하되, 사업자의 수검부담도 감안

1 주요 사업자에 대한 검사

- □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**상당 부분을 차지**하는 주요 사업자에 대하여 **법규 이행 여부**를 집중 점검하여 **시장질서 확립** 유도
 -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 등을 감안하여 **원화마켓** 거래소 2사를 검사대상으로 선정 예정

2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

- □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하여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자를 선별하여 현장검사 실시
 - 현장컨설팅, 민원 등을 통해 파악된 내부통제 수준,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**코인마켓 거래소 3사**, **지갑·보관업자 1사를** 선정 예정

3 기타 제보 등을 통한 검사

□ 기타 제보·민원 등을 통해 제기되는 중요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테마검사 실시

선정 테마	중점검사 항목	검사대상
√ 주요 사업자	- 법규상 의무 준수의 적정성	원화마켓거래소(2사)
√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	- 자율규제 준수 여부 등	코인마켓거래소(3사) 지갑·보관업자(1사)
√ 제보 등을 통한 위법혐의 제기	- 위법혐의 관련 사실관계 확인	혐의 제기 사업자

III. 2024년도 가상자산사업자 중점 검사사항

[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중점 검사사항]
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

사업자 내부통제 역량 강화

이용자보호 체계 점검

- √ 이용자 자산 보관·관리 규제 준수 여부 **1** √ 이용자 가상자산 관리 내부통제 전반
- √ 기타 법규상 의무 이행 적정성
- √ 자율규제 준수 현황 및 불건전 영업행위 ┃ √ 감독당국 보고 체계 구축 현황

- √ 준비금 적립 등 책임 이행 능력 여부

- √ 이상거래 상시감시 적정성
- √ 불공정거래 의심사건 적출·처리 적정성

가상자산법 준수 등 이용자 보호 체계 점검

- ◆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**법상 주요 의무 이행 여부** 및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통해 시장질서 확립 유도
- □ 이용자 자산(예치금, 가상자산) 보관·관리 규제 준수 여부
 - 은행 등 관리기관과의 **관리계약** 내용의 적정성, **예치금이용료**의 합리적 산정 및 지급 여부 등 확인
 - 이용자 가상자산의 실질 보유* 및 고유 가상자산과 **지갑 분리**ㆍ **관리** 여부, **콜드월렛 분류·관리****의 적정성 등 점검
 - * 가상자산 보관 및 스테이킹 시 통제권 유지 여부, 자산의 실재성 등 확인
 - ** 거래지원 종료 가상자산의 경제적가치 산출기준·콜드월렛 비율 산정기준의 적정성, 기준의 일관적 적용 여부 등
- 2 기타 법규상 의무 이행의 적정성
 - o 해킹 등의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, 거래기록 유지 등의 적정성 점검

- ③ 시장 자율규제 준수 및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
 -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의 내규 반영·이행의 적정성, 불공정·과당 경쟁,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시장 질서 저해 행위 여부 확인

2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에 대한 사전예방적 점검

- ◈ 재무상황 열악,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 취약 등으로 인해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
- ① 이용자 가상자산 관리 내부통제 전반(고객원장의 완전성, 가상자산 실재성, 입출금 차단 적정성 등) 및 사고 책임 이행 의무(보험 가입 등) 준수 등
 - 이용자명부 작성의 적정성,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·관리(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 여부) 및 임의 탈취 여부 등 점검
 - 가상자산 입·출금 차단의 적정성, 임의적인 출금차단에 따른 법적분쟁·민원 다수 발생 사업자의 내부통제 적정성 등 확인
- ②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체계(입출금 차단, 불공정거래 의심 등) 구축 및 이행 현황, 기타 자율규제 준수의 적정성 등 점검

3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이행 현황 점검

- ◈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사업자의 감시체계 구축 및 업무 운영 현황 점검을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지원
- ① 가격·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 적출 등 이상거래 상시감시의 적정성
 -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·운영 및 전담조직 운영 현황, 상시감시 관련 내규 마련, 이상거래 적출 기준 등의 적정성 확인
- ②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 적출 및 처리의 적정성
 - 이상거래 **적출·심리**업무 및 수사기관 **신고·**금융당국 **통보체계** 등 이용자 보호 및 **건전한 거래질서 유지**를 위한 조치의 적정성 점검

IV. 향후 계획

- □ 금융감독원은 중점 검사항목을 중심으로 가상자산법 준수 여부, 이용자보호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,
 - 제보, 신고사항 등 **긴급 현안 점검 필요사항**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사인력을 투입하는 등 탄력적인 검사체계를 구축・운영할 예정
- □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**위법사항**에 대해서는 **엄정한 제재**를 통해 **시장질서**를 **확립**하는 한편,
 -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